

주주총회소집공고

2010년 3월 4일

회 사 명 : 대원강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열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전 화) 02-3455-7300

(홈페이지) <http://DWK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길용

(전 화) 02-3455-731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 63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2010년 3월 19일,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본사 회의실

* 제 6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3기(2009.1.1~2009.12.31)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참석율이 저조한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자본시장과금
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서는 원활한 주총 성원을 위하여 주주님들의 의결권 행사여부에
관한 의사표시(하단 「의사표시통지서」 참조)가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님들
의 의결권의 찬, 반 비율에 따라대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통지서」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기재하시어 FAX, 우편, 私
송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주총회 회일 5일전(2010.3.13)까지 또는 증권회사로 7일
전(2010.3.11)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동환 (출석률: 78 %)	김도중 (출석률: 78 %)	고창현 (출석률: 89 %)
			찬 반 여 부		
1차	2009. 2. 2	1.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 2. 현금배당 결정(1주당 60원) 3. 계열회사 입보연장 승인의 건 (대원아메리카의 우리은행 일반대 360만불 입보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2009. 3. 20	1. 대표이사 재선임(허재철 회장)	찬성	찬성	찬성
3차	2009.4.27	1. 신규차입 승인의 건(한국산업은행 사모사채 100억원) 2. 계열회사 입보연장승인 (세운철강 : 우리은행, 당좌차월 6억원, 기타할인어음 54억원) 3. 계열회사 출자(증자)승인(대원아메리카 6백만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차	2009. 7. 20	1. 계열회사 입보연장승인(북경대원 : 산업은행 무역어음 400만불, 세운철강: 우리은행 지급보증 960백만원)	찬성	찬성	찬성
5차	2009. 8. 10	1. 계열회사 입보승인 (대원인디아 : SCB 운전자금 483만불, 시설대 483만불)	찬성	찬성	찬성

6차	2009. 8.24	1. 계열회사 임보승인(D&D : 수출입은행 시설대 180만 유로, 일반대 180만유로)	찬성	찬성	찬성
7차	2009.10.19	1. 계열회사 임보승인 (북경대원 29.7억원, 대원아메리카 35.6억원)	찬성	찬성	찬성
8차	2009.12. 2	1. 자기주식처분결정(처분주식 보통주 4,600,000주)	불참	불참	찬성
9차	2009.12.21	1. 주식배당결정 (1주당 배당주식수 0.0338468주 : 배당주식총수 2,000,000주)	불참	불참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3	2,400	113	38	-

* 주총승인금액은 총 등기이사 10명에 대한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삼원강재 (계열회사)	매출, 매입	2009.1.1~2009.12.31	1,146	23.1%
대원총업(주) (계열회사)	매출, 매입	2009.1.1~2009.12.31	334	6.7%

* 상기 비율은 외부감사 종료 전 2009년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4,960억원)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의 제조, 유통, 운행에 연관된 산업까지도 포괄하는 국가의 핵심산업임. 자동차 제조에는 철 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 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2) 산업의 성장성

2009년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지속 및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수요 하락으로 당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생산은 전년 대비 8.2% 감소하였음. 내수는 소비세율 인하, 노후차량 교체 지원 등의 경기부양책과 신차효과에 힘입어 전년대비 20.7%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 세계 자동차 판매 감소와 해외 모회사 판매망을 이용하는 국내업체의 수출여건 악화 및 해외 생산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9.9% 감소하였음. 2010년도 내수는 2009년말 노후차 교체지원정책 종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 다양한 신차출시 등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1,400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은 선진시장의 회복 지연, 해외생산 증가 및 원화 가치 상승 등의 감소요인이 있지만 전략모델 투입과 신흥시장 수요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7.0% 증가한 2,300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10년 전체 자동차 생산은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5.3% 증가한 3,700천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년 도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자동차생산(천대)	3,513	3,827	4,086	3,840	3,699	3,469

자동차수출(천대)	2,149	2,684	2,847	2,648	2,586	2,380
수출액(백만불)	22,975	31,907	33,841	29,998	26,925	24,050
연간생산능력(천대)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참고 : KD 수출은 제외하였으며, 자료는 자동차통계월보를 참조하였음)

(3) 경기 변동의 특성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자동차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기호황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띄는 반면 경기침체로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음.

(4) 경쟁 요소

자금부족에 시달려온 쌍용자동차는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포기로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GM-대우 또한 모회사인 미국 GM의 경영 악화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고, 해외 자동차 업체의 국내 자동차산업 진출과 세계 자동차업체의 대형화 등으로 자동차 부품의 구매 방식도 모듈화 및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외 부품업체들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은 해외 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인수·합병 및 도태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대형 부품업체의 탄생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들도 해외 부품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품질,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내 유일의 종합 스프링 메이커인 당사는 스프링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생산성향상, 원

가철감 및 관련기술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TS 16949 인증을 보유하여 품질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 14001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함께 해외시장개척의 일환으로 미국의 BIG3사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코일스프링 및 스테빌라이저바를 수출 중에 있으며, 제품, 소재뿐만 아니라 설비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음. 또한 당사는 현재 남미, 중국 및 유럽 등 여러 회사와 스프링 제조기술 이전에 관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당사의 기술을 세계 여러나라에 제공하는 등 당사의 기술수준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스프링 제조용 소재는 특수강인 스프링강으로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삼원강재 및 포스코특수강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또한 정밀 선스프링용 선재는 고려제강 등 국내업체 이외에도 일본의 여러 업체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동차산업 관련 법령 및 각종 정부규제로서는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관련 규제, 배기가스, 소음, 유해물질 등 환경 규제와 공정거래관련 규제, 수출입 관련 규제, 교통운수 관련규제 및 각종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등이 있음.

특히, 현재 자동차의 구매 / 등록 / 소유 / 운행과정에는 모두 1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유사 성격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동차와 무관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의 중요 핵심기능 부품인 스프링 및 시트를 생산,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자동차 생산판매의 증가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음.

2009년 매출은 401,5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3% 감소한 실적을 나타내었음. 이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당사의 주력제품인 스프링과 시트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쌍용자동차가 정부의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 신청과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으로인하여 자동차 생산이 부진하여 당사의 시트제품 매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손익면에서는 자동차 생산부진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98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었음.

(2) 시장점유율

○ 스프링제품

스프링의 경우 주로 자동차에 소요되는 열간스프링의 제조업체는 당사와 삼목강 업이 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80:20으로 최근 3년간 점유율의 변화는 없음.

자동차 및 각종 산업용에 소요되는 냉간스프링(정밀 선스프링)의 제조업체는 당사를 비롯하여 국내에 수백여개가 있음. 제품별 용도, 형태, 크기, 사용재료 및 요구품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당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시트제품

국내의 각종 차량용(자동차 및 철도시트 포함) 시트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의 시트사업부(현대자동

차 소요분 자체조달)가 국내시장의 약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당사, (주)고려, 엠시트, 대원산업, 한일이화, (주)한일, JCI, DAS 등 다수의 업체가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비슷한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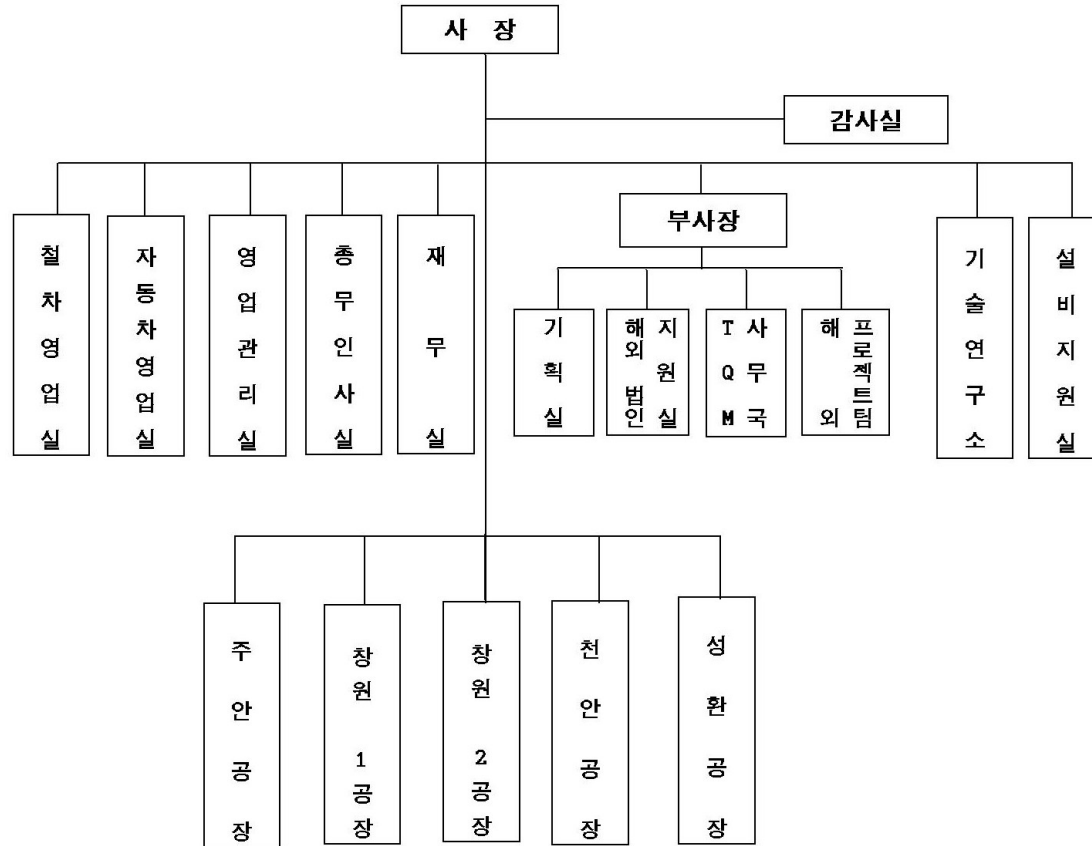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요제품인 차량용 스프링 및 시트의 주요시장은 자동차회사이며, 전량 주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내수 대 수출(LOCAL 포함)의 비율은 약 55:45 정도임. 또한 동유럽 및 동남아, 중국등 자동차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에의 진출이 유망한 업종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특별한 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63 기 2009. 12. 31 현재

제 62 기 2008.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3 기	제 62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78,401,175,684	92,285,706,276
(1) 당 좌 자 산	61,951,922,716	69,424,912,933
(2) 재 고 자 산	16,449,252,968	22,860,793,343
II. 비 유 동 자 산	417,669,089,587	406,865,440,646
(1) 투 자 자 산	135,196,947,129	113,712,274,105
(2) 유 형 자 산	276,873,978,355	288,018,883,482
(3) 기타비유동자산	5,598,164,103	5,134,283,059
자 산 총 계	496,070,265,271	499,151,146,922
부 채		
I. 유 동 부 채	132,244,680,062	151,241,575,938

II. 비유동 부채	81,252,905,903	74,610,567,891
부채 총계	213,497,585,965	225,852,143,829
I. 자본금	30,000,000,000	30,000,000,000
II. 자본잉여금	83,552,187,230	81,161,540,871
III. 자본조정	(-)2,773,263,341	(-)12,108,511,539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9,135,988,829	104,305,660,986
V. 이익잉여금	72,657,766,588	69,940,312,775
당기 순이익 당기: 5,986,839,413 원 전기: 5,911,343,309 원		
자본 총계	282,572,679,306	273,299,003,093
부채와 자본총계	496,070,265,271	499,151,146,92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63 기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제 62 기 (2008. 1. 1 부터 2008.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63 기	제 62 기

I. 매출액	401,544,475,917	473,903,637,803
II. 매출원가	368,472,302,203	439,888,441,967
III. 매출총이익	33,072,173,714	34,015,195,836
IV. 판매비와관리비	27,799,628,215	38,138,594,036
V. 영업이익	5,272,545,499	(-)4,123,398,200
VI. 영업외수익	26,385,276,604	32,819,254,509
VII. 영업외비용	23,357,500,196	21,707,311,429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300,321,907	6,988,544,880
IX. 법인세비용	2,313,482,494	1,077,201,571
X. 당기순이익	5,986,839,413	5,911,343,309
기본 주당 당기순이익, 회석 주당 당기순이익 당 기: 109원 전 기: 108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3 기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제 62 기 (2008. 1. 1 부터 2008.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3 기	제 62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4,490,239,788	62,100,785,97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8,503,400,375	56,189,442,666
2. 당 기 순 이 익	5,986,839,413	5,911,343,309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2,694,115,870	3,597,385,600
1. 이 익 준 비 금	60,000,000	328,000,000
2. 자기주식처분손실	1,043,218,270	-
3. 배 당 금	1,590,897,600	3,269,385,600
가.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10원(2%)		
전기 :60원(12%)		
나. 주식배당		
주당 배당금(율)		
보통주 당기:16.9원(3.38468%)		
전기 : -원(-%)		
IV.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1,796,123,918	58,503,400,37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63기 : 1주당 현금배당 10원, 주식배당률 3.38468%

62기 : 1주당 현금배당 60원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3조 (소재지)</p> <p>① (생략)</p> <p>② 본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점, 출장소, 영업소 등을 설치, 이전, 폐지할 수 있다.</p>	<p>제3조 (소재지)</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본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u>국내</u> 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현지법인 등을 설치, 이전, 폐지할 수 있다.</p>	<p>-이사회 결의사항의 명확화</p> <p>-이사회 결의사항 명시</p>
<p>제8조 (신주인수권)</p> <p>① (생략)</p> <p>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u>증권거래법 제 2 조 및 제 3 항의</u> 규정에 의하여 신</p>	<p>제8조 (신주인수권)</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u>이사회의 결의로</u>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제1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주주우선공모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함</p> <p>-제8조의1 ①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문을 통합하고, 법령 변경의 내용을 반영</p> <p>-국내 관련법령을 삭제하여 해외에서의 신주발</p>

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 189 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일반공모중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3. 증권거래법 제 191 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③ (생략)

④ (신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의 규

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

행도 포함되도록 함

-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제8조의1 ①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문을 통합

하고, 법령 변경의 내용을 반영

-제8조의1의 전면 삭제로 제8조의1 ③항을 제8

조 ④항으로 조문 개정

-제8조 ②항과 발행한도를 제외하면 같은 내용

을 구성하고 있어, 제8조의1 을 전면 삭제하고

제8조 ②항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

해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이 증권이라는 개념으

제8조의1 (일반공모증자등)

① 본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회사는 액면총액이 6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8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

하는 경우

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8조의1 (삭제)

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좌동)

1. ~ 4. (현행과 동일)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의 규

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동일)

로 통합됨에 따라 조정

-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상법에서 공고방법을 일간신문외에 전자공

시 시스템을 추가로 인정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신탁의 주체를 명시함

-상위법 법령 내용에 따른 문구조정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13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생략)

제17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략)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하의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생략)

제13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좌동)

1. ~ 4. (현행과 동일)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현행과 동일)

제 17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현행과 동일)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 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

-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생략)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생략)

제42조의2 (주식의 소각)

① ~ ② (생략)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

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42조의2 (주식의 소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좌동)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p>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 년도말 상 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일것.</p> <p>④ (생략)</p>	<p>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 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④ (현행과 동일)</p>
---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정관 변경은 「증권거래법」 폐지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도입에 따른 법령 변경 등의 사유로 작성되었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나의전	430305	-	없음	이사회
임만승	550913	-	없음	이사회
황선경	551117	-	없음	이사회
김동환	411022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고창현	460514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총 (5)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나의전	대원강업(주) 고문	1993년 대원강업(주) 전 무 1997년 대원강업(주) 부사장 2007년 (現)대원강업(주) 고문(생산총괄)	해당사항 없음
임만승	대원강업(주) 전무	1992년 대원강업(주) 부 장 1997년 대원강업(주) 집행임원 2007년 대원강업(주) 상 무 2010년 (現)대원강업(주) 전 무	해당사항 없음
황선경	대원강업(주) 전무	1992년 대원강업(주) 부 장 1998년 대원강업(주) 감 사 2007년 대원강업(주) 상 무 2010년 (現)대원강업(주) 전 무	해당사항 없음
김동환	대원강업(주) 사외이사	1995~1999년 한국상업은행 상무이사 2000~2003년 두산건설 사외이사 2004년 (現)대원강업(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고창현	대원강업(주) 사외이사	2001~2004년 포스데이타 전무이사 2004~2007년 소프트파크 경영고문 2007년 (現)대원강업(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한동석	421209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한동석	대원강업(주) 감사	2000~2002년 한신기업(주) 고문 2007년 (現)대원강업(주) 감사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0(3)	10(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4억원	27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30백만원	12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